

독일 동물보호법령을 중심으로 본 동물보호

김 수 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5년 7월

동물보호를 단순히 우리 곁에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 습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고기를 먹고, 모피를 입고, 피혁제품을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동물보호를 해치는 것이다. 동물보호의 개념은 동물이 인간의 도구라는 생각하는 견해부터,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기본권을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다양하지만, 현실에서 통용되는 동물보호의 개념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인 동물이 인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생명체로서 최대한 존중하자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동물에게 민법상 물건이 아닌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서 제3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동물보호를 국가목표의 하나로 정한 것처럼 그 지위가 높다. 동물보호에 관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있으며, 동물의 도살, 개사육, 이용동물사육 등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은 국내법화되어 각종 법령으로 구체화하였다.

현재 독일의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으로 이용동물의 사육방법을 동물의 종에 맞도록 바꾸려는 것과 동물실험 및 운송, 도살 시 인도적인 처우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동물의 종에 적합한 사육이라는 윤리적 목표와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조절을 위해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정부는 소비자가 동물보호를 제대로 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직접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애완견, 공중도덕의 문제, 동물실험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윤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1. 동물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

동물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동물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동물을 인간의 도구로만 인정하는 견해, 동물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 생물로 인정하나 동물보다는 인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 동물을 인간과 동등하게 보는 견해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달라진다. 독일의 경우, 크고 작은 동물보호관련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 백만 명에 달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동물보호의 내용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시골농장에서 자유롭게 노닐고 있는 닭, 주인과 함께 공원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고 있는 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동물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동물들이 자신의 종과 습성에 맞게 살아가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동물보호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기를 먹고, 모피 및 피혁제품을 사용하고, 동물실험을 하는 한 동물보호의 원칙은 강자에게 베푸는 관계만은 아니다. 다만, 인간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들의 생존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로서 존중하자는 동물보호의 일반적 의미는 소비자나 축산업자, 피혁업자 또는 동물실험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다. 관련있는 이익집단과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애완동물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동물보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화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독일 동물보호법과 그 관련법령들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는 동물보호법을 제정, 개정할 때, 적절한 동물보호를 고려하여 다른 법익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전 유럽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연구와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동물의 법적 지위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으로 보고 있다. 동물이 물건의 일종이라면 누군가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그 동물과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에서 형성되는 해당 동물의 가격 만큼 손해배상하면 되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1990년 개정된 독일민법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가 동물자체의 가격보다 높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물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동물의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인식변화는 독일 기본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동물보호는 과거에

자연보호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동물을 하나의 개체로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상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물실험이나 마취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라는 법익과의 형량 면에서 우선하지 않았다.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헌법에 적합한 질서의 범위 내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함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동물이 “생명체를 가진 동료”로 존중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동등성, 즉 인간에게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동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독일 동물보호법령의 체계와 내용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원칙과 도살, 시술, 동물실험, 동물거래 등에 관한 내용과 법률 위반 시 제재 및 경과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인간이 동물을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동물의 종과 그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먹이며, 돌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어야 하고, 고통이나 피할 수 없는 불쾌감을 주거나 상해를 끼칠 정도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동물, 즉 축사 안에 있는 소, 돼지, 닭뿐 아니라 가정

내의 애완동물, 동물원의 동물, 야생동물, 유기된 동물, 도살될 동물,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도 적용된다.

동물보호법을 시행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시행규칙과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형별 법령들이 있으며, 예를 들어 동물보호의 관점에 입각한 이용동물사육규정, 개사육규정, 도살규정, 동물운송규정과 실험동물신고규정이 있다.

(1) 이용동물

국가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는 동물 및 식량, 양모, 가죽, 모피를 생산하거나 다른 농업적인 목적을 위해 사육하는 기타 온혈척추동물인 농장동물은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데, 독일은 이용동물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동물보호의 관점만을 강조하면, 자신의 종과 습성에 맞게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먹이와 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모두 확보되어야 하지만, 축산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조절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경제성은 높으나 동물의 자연스러운 습성에 반하는 산란닭의 닭장사육(배터리 우리 사육) 문제이다. 1984년 가금류 농가단체 대표자들의 요구로 제정된 산란닭규정은 닭 한 마리당 A4 용지의 2/3에 달하는 면적(450cm²)을 배정하고, 알을 낳는 공간이

특별히 만들어지지 못한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를 비롯한 여러 주는 이러한 밀집사육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1999년 연방헌법재판소는 닭이 날개를 펼치거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며, 알을 낳는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공간과 알을 낳게 하기 위해 강제로 굶기거나 하루 종일 인공조명을 하는 등 생체 리듬을 잃게 하는 상황을 금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동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쫓는 등의 이상 행동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동물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을 선언하였다.

그 후 새롭게 제정된 동물보호-이용동물규정은 2011년 말까지 배터리 사육을 전면금지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받아들여, 기존의 배터리 우리 사육은 2006년 말까지만, 면적이 조금 넓어진 상태로 허가가 난 배터리 우리 사육은 유럽연합이 정한 것처럼 2011년 말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평지에서 닭을 키우는 방법 등의 대체방법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산란닭장의 경우는 현재 바닥면적은 200cm x 150cm,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200cm 떨어져야 하고, 모래목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은 철망이 없는 특별히 보호된 공간에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동물들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운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닭장에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할 경우 적어도 밤중 8시간은 조명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개조 등의 부담을 이유로 축산농

가의 반발이 잇따르자 2004년 말 닭 한 마리당 약 800cm²(A4 용지는 634cm²이다)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는 배터리 우리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한번 개정하여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돼지사육규정에서 더 심해서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른 돼지사육의 최저 필요면적 등을 현재 적용시키지도, 법령의 내용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독일은 유럽재판소에 제소되어 있고, 유럽위원회에 벌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있다.

(2) 동물실험

동물실험은 동물실험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Replacement), 실험동물 수의 감축(Reduction), 고통의 경감(Refinement)이라는 3R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독일 동물보호법의 경우도 이를 독립된 장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경우, 즉 인간의 질병치료나 장애예방을 위한다거나 환경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기초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실험대상으로 감각생리학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덜 발달된 동물에 대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행하며, 그 동물로는 실험의 결과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온혈동물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은 마취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관할 행정기관에 실험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받아야 하는데, 행정기관은 동물실험이 필수적인지, 실험기관의 동물의 복지상태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동물실험 후에도 실험의 이유, 사용된 동물의 중

류와 수, 실험하는 사람 등을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실험기관은 동물실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학이나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을 동물보호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실험 시 동물보호의 준수 여부를 감시, 조언한다.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 화장품과 무기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은 금지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대체수단이 없다하더라도 화장품테스트를 위한 동물실험은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2005년에 발효된 폐수분담금법과 폐수처리법에 따라 그 동안 동물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 폐수오염도 측정을 위한 황금잉어의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물고기 알로 실험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생물학, 의학 또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양심상의 이유로 살아있는 개구리의 배를 갈라 심장근육의 구성이나 작동양식을 관찰하는 동물실험에 참여하기를 꺼려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수업 중 동물학대에 반대하는 학생그룹(SATIS)이 대체방법을 발굴해내고, 법적인 투쟁도 벌였다. 연방행정재판소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와 교수의 강의 방법 선택과 학문의 자유를 다투는 사건에서 교수에게는 수업방법을 선택할 특권이 있으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할 입증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이 생물학, 의학,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업에서와 동물치료를 보조하는 기관의

교육에서 동물실험이 가능하지만, 시청각 자료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2년 개정된 기본법에 동물보호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동물실험 대체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례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3) 애완견과 위험한 개

독일에서는 현재 개 칫솔이 트렌트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애완견 패션산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공원에서는 개가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놀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입마개를 쓴 큰 개나 목줄을 맨 개를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개사육규정은 개가 머물 장소의 필요면적 및 환경을 명시하고, 사료 및 보살핌, 한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개의 마리수 제한, 사육자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요구조건들 및 특별히 공격적인 개의 품종간의 교배 및 사육 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는 바깥에서 운동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도록 소유주는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주 이전의 강아지는 어미로부터 떼어놓아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 한 장소에 묶어둘 경우에도 최소한 앞으로 6m, 옆으로 5m 정도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 끈의 넓이도 적당해야 한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귀나 꼬리를 자른 개를 전시해서도 안 된다. 애완견을 기르는 경우, 법은 소유주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유

한 개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다루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애완견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18세 이상일 것과 보유할 수 있는 개체수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험한 개가 아닐 지라도 개 소유자는 개가 일정한 연령(주에 따라 3-6개월)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액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투견의 경우에는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맹도견, 보호견, 양치기 개 등의 실용견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등록을 한 경우 개에게 허가증(신분증)이 발급되고, 신분증을 달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다. 고양이나 승마용 말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개만 부과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으나 연방행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각 주의 개보유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보도, 상점, 도심, 군중이 많이 다니는 도로 등에서는 개가 특별히 흥분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줄을 매도록 하며, 울타리가 없는 공원, 식물원, 어린이 놀이터에도 목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00년 함부르크의 어느 학교에서 놀던 학생이 개에게 공격을 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독일 연방정부는 2001년 4월 21일 '위험한 개의 퇴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셔어-테리어, 스탠포드셔어-볼테리어와 볼테리어 4종을

위험한 개로 지정하여 그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위험한 개를 소유하려면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조건으로는 소유주가 만 18세 이상이고, 신체적으로 개를 안전하게 줄에 묶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신뢰성을 갖추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형법에서는 이러한 품종의 개를 수입,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위에 언급한 개를 키우거나 사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평등원칙이 위 규정으로 인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개를 품종으로 정한 것과 이를 제한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타당한 규정이나 이 문제가 동물보호와 관련되기 보다는 위험방지 목적이 강하다고 보아, 법제정 권한이 연방이 아니라, 주에 있다고 보고 소송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4) 동물의 인도적 운송과 도살

독일은 동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유럽지침 등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한 '운송과정의 동물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척추동물을 이동시킬 때는 각각의 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먹이와 물도 일정한 간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2시간 이상 한 곳에 머물 경우에는 먹이와 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물을 싣고 내릴 때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하며, 포유류 등의 머리, 귀, 뺨, 다리, 꼬리 등을 높이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동물을 이동하는 자는

동물소유자의 주소와 일시, 목적지를 적어 보유해야 하고,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통지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동물을 용기에 담아 보낼 경우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될 경우에 동물이 수신자에게 도착되기 전까지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되돌아오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물과 먹이를 확보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의 경우는 마취로 고통을 느낄 수 없도록 한 후에 도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유럽연합이 제정한 도축시점까지의 동물보호에 대한 지침이 국내법화 된 '동물보호-도살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흥분, 고통, 불쾌감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고통 없는 도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도살전에도 동물들이 혹독한 날씨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공간과 물을 제공해야 한다. 도살장에서도 동물의 건강상태는 하루에 두 번씩 검사하고, 아프거나 상처를 입은 동물은 즉시 도살해야 한다. 또한, 갑각류는 끓는 물로, 돼지는 이산화탄소 가스에 적절한 시간 노출하여 죽이도록 하는 등 도살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4. 연방정부의 지원활동

연방정부는 이용동물의 사육을 동물의 종에 적합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에게

사육시설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등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식 있는 소비자행동을 통해 동물보호를 염두에 둔 이용동물의 사육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결국 소비자가 동물의 종에 맞게 생산된 생산물을 그에 상응한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실제로 동물보호에 걸맞은 이용동물의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02년 "자유롭게 자란 것이 더 맛있다"라는 표어 아래 산란닭의 사육방법과 계란의 원산지표시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계란의 표시규정에는 모든 A등급의 계란에 사육방식, 지역과 생산 농가를 표시하게 하고, 계란묵음의 포장에 한 표시는 소비자가 잘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할행정기관이 직접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지금까지 사육방식과 지역만을 표기하도록 한 것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었고, 소비자들이 계란의 표시를 통해 의식적으로 동물에 적합한 사육형태의 계란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육류위생과 관련한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동물의 종에 맞는 사육을 한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 11월에는 학생들에게 학급단위별로 "닭은 어떻게 사나"란 주제로 경시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말까지 거의 만여 명의 어린이가 닭의 사육과정을 관찰하고, 800여 개의 학급에서 경진대회를 열어 507개의 창의적인 프로젝트 성과물을 제출하였다.

독일의 동물보호단체는 법조문의 강화보다는

기존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동물보호단체에게 단체소송권을 주는 내용을 도입하고자 연방상원에 제출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연방 소비자보호, 식량 및 농림부는 3년마다 보고서를 내었으나 2004년 법개정으로 2년마다 동물보호의 발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2005년 현재 제9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5. 독일의 동물보호에 대한 평가

과거 공개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인간의 감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형법에서 처벌하던 규정이 1972년 동물의 생명보호 내지 건재를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1986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같이 살아가는 동료"로서 그들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가 형법에서도 부수적으로 다루던 문제에서

이제는 새로운 동물보호법, 더 나아가 문화를 선도하는 법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동물보호지침이라는 우산아래 독일의 동물보호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독일은 동물보호를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목표로 정한 나라이지만 산란닭과 돼지사육에 관한 유럽지침을 국내법화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동물보호법의 임무인 윤리적 원칙과 학술적, 경제적인 요구조건들을 상호 조화롭게 고려해야하는 일은 험난해 보이기만 한다. 그러나 다른 법들과는 달리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규정을 예시하는 성격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현재의 학술적인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규정을 만드는 수순을 밟는다고 볼 때,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하나의 이상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진보적인 법률로 세계 각국의 동물보호법에 모범이 되고 있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5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